



제429회국회(정기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아이디어 탈취행위 및 데이터 부정취득·사용 처벌>
■ 박민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676호)

2025.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아이디어 침해 행위	4
2. 데이터 부정취득·사용 행위	8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박민규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6. 9.
3. 회부연월일 : 2025. 6. 1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정경쟁행위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타인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등 행위유형에 대해서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그런데 일부 부정경쟁행위 유형이 처벌 규정에서 제외됨에 따라 부정경쟁행위 방지의 실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타인의 아이디어 침해, 데이터의 부정한 사용 등에 해당하는 부정경쟁행위의 유형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 방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4항제1호).

Ⅲ. 검토의견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8조(벌칙) ① ~ ③ (생략)	제18조(벌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 ----- -----.
1. 제2조제1호(아목, 차목, 카목1)부터 3)까지, 타목 및 파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	1. ----- <u>아목, 타목 및 파목</u> -----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⑤·⑥ (생략)	⑤·⑥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 차목] 및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되는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데이터 정보를 부정하게 취득 또는 사용하는 행위[같은 법 제2조제1호 카목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부정경쟁행위’로 정의하면서도,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에서는 제외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부정경쟁행위 방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타인의 아이디어 침해, 데이터의 부정한 사용 등에 해당하는 부정경쟁행위의 유형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임.

<부정경쟁행위 유형별 형사처벌 여부>

근거 조문	부정경쟁행위 유형	형사처벌 여부
제2조제1호 가목	상품표지 혼동	○
제2조제1호 나목	영업표지 혼동	○
제2조제1호 다목	저명표지의 식별력·명성 손상	○
제2조제1호 라목	원산지 허위표시	○
제2조제1호 마목	생산·가공지 등 오인 야기	○
제2조제1호 바목	품질 등 오인 야기	○
제2조제1호 사목	대리인에 의한 부당한 상표 사용	○
제2조제1호 아목	도메인이름의 부정등록 등	×
제2조제1호 자목	상품의 형태 모방	○
제2조제1호 차목	거래과정에서의 아이디어 탈취	○(개정안 의결시)
제2조제1호 카목	데이터의 부정사용	○(개정안 의결시)
제2조제1호 타목	퍼블리시티의 무단사용	×
제2조제1호 파목	그 밖의 부정경쟁행위	×

개정안은 ‘아이디어 탈취 행위’와 ‘데이터 부정취득·사용’의 두 가지 별개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내용이므로, 양자를 서로 구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 아이디어 침해 행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차목¹⁾에서 규정하는 아이디어 탈취 행위에서 ‘아이디어’란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및 거래 과정에서 제시되는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영업상 아이디어를 말하고, 예컨대 서비스 운영 방식, 콘텐츠 제작 시안, 물품 제작 공정, 원가 절감 기술, 마케팅 전략 등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원천으로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그 대상이 될 수 있음.

특히 중소·벤처기업 또는 개발자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아이디어를 대기업이 거래상담, 입찰, 공모전 등을 통하여 취득한 뒤 이를 사용 계약이나 금전적 보상 없이 무단으로 사업화하여 중소·벤처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있어,

이를 근절하려는 취지로 지난 제20대 국회(2018년 3월)에서 아이디어 탈취 행위를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에 포함시키도록 개정하였고²⁾, 아이디어 탈취 행위에 대해서도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권, 특허청장의 부정경쟁행위 조사권, 특허청장의 시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차.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제2012752호)

정권고·시정명령권 규정³⁾ 등이 적용되도록 하였으며, 고의성이 입증되는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음⁴⁾.

그러나 이러한 행정적 제재의 실효성이 낮다거나⁵⁾ 피해기업이 민사소송상 손해를 전보받기 쉽지 않다⁶⁾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아이디어 탈취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에 포함한 2018년 이후에도 여전히 대기업이 중소기업·스타트업의 아이디어를 탈취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보다 실효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청구권 등) ①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1.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2.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3.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의 등록 말소
4. 그 밖에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7조(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 ① 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2조제1호(아목과 파목은 제외한다)의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그 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영업시설 또는 제조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자료나 제품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분량의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등) ① 특허청장은 제2조제1호(아목과 파목은 제외한다)의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행위의 중지, 표지 등의 제거나 수정, 향후 재발 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손해액의 추정) ⑥ 법원은 제2조제1호차목의 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조 또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5) KBS뉴스, “‘아이디어 탈취’ 행정처분 있으나 마나”, 2023.6.7.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693092&ref=A>)

6) 매일일보, “아이디어·기술 탈취 잡음… 피해 입증부터 어려운 스타트업”, 2024.5.16. (<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1120868>)

<아이디어 탈취 행위(차목) 조사 접수 현황>

연도	'18	'19	'20	'21	'22	'23	'24
건수	29	15	18	25	22	23	14

자료: 특허청

아이디어 탈취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인정되는 것으로 보임.

다만, 부정경쟁행위인 아이디어 탈취 행위가 인정되기 위한 조건이 다소 까다롭고 복잡하여 행위자가 행위 당시에 이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 즉, 고의의 입증이 쉽지 않으므로 예상보다 실효성이 낮을 수 있고,

아이디어 탈취 행위가 부정경쟁행위가 되기 위한 조건

- ①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 과정이 있어야 함(신의성실의무가 존재하는 관계)
- ② 그 아이디어는 경제적 가치를 갖는 것이어야 함(경제적 가치 필요)
- ③ 기술적 아이디어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것이어야 함(신규성 및 구체성 불필요)
- ④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사용되었어야 함(상대방의 노력에 무임승차한 것)
- ⑤ 자신의 영업상 이익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해야 함(악의적인 특정 상대방과의 관계)
- ⑥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어야 함
- ⑦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것이 아니어야 함

자료: 김현숙, “아이디어 탈취 금지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의 의미와 한계”, 2018. 12.

특히 처벌을 면제 요건인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아이디어

어'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선행기술조사와 같은 별도의 전문적 절차가 필요하고 법문 그 자체로는 처벌 대상인 행위의 특징이 어려우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형벌법규 명확성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으며,

부정경쟁행위의 대상인 아이디어는 명시적·공개적으로 권리 범위가 특정된 특허권과 달리 '거래교섭 또는 거래 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이기만 하면 되므로 적용 대상이 넓어 법 집행시 자의성이 확대될 여지도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아이디어 탈취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하는 규정을 도입하게 되면 수사 및 재판기관의 입장에서 집행상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개정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특허청 및 법무부는 아이디어 탈취 행위를 근절하려는 입법취지에 공감하나, 아이디어의 의미가 형사처벌의 요건을 구성하기에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참고로 일본의 「부정경쟁방지법」, 독일의 「부정경쟁방지법」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아이디어 탈취 행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⁷⁾.

7) 특허청, “아이디어·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법·제도개선 연구”, p.86, 2023.12.

2. 데이터 부정취득·사용 행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카목⁸⁾에 따르면 데이터 부정취득·사용 행위에서 ‘데이터’란 ①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 중, ② 업(業)으로서⁹⁾ 특정인 또는 특정 다수에게 제공되고, ③ 전자적 방법으로 상당량 축적·관리되는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로서, ④ 영업비밀이나 저작권법 등으로 보호되지 않는 것을 말함.

그리고 데이터 부정취득·사용이란 ① 데이터 접근권한 없는 자의 부정취득·사용, ② 데이터 접근권한 있는 자의 부정취득·사용, ③ ① 및 ②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도 해당 데이터를 부정취득·사용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데이터[「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 중 업(業)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상당량 축적·관리되는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1) 접근권한이 없는 자가 절취·기망·부정접속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공개하는 행위
- 2) 데이터 보유자와의 계약관계 등에 따라 데이터에 접근권한이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데이터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데이터를 사용·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3) 1) 또는 2)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공개하는 행위
- 4) 정당한 권한 없이 데이터의 보호를 위하여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제거 또는 변경(이하 “무력화”라 한다)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장치 또는 그 장치의 부품을 제공·수입·수출·제조·양도·대여 또는 전송하거나 이를 양도·대여하기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 다만, 기술적 보호조치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장치 또는 그 부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업으로서란 무상 제공인 경우 또는 기업이 아닌 개인이 제공하는 경우일지라도 사회 통념상 그것이 사업 수행의 일환으로 행하여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함.”

(특허청, 「데이터 보호를 위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사항 안내서」, p.12, 2022.)

구체적으로 ‘숙박 플랫폼 간 숙박정보 무단 크롤링¹⁰⁾’, ‘온라인 백과사전 무단 복제(미러링¹¹⁾)’와 같은 데이터 부정취득 방식이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음¹²⁾.

<데이터의 종류 및 법제도적 보호 현황>

구분	비공개 데이터	공개 데이터
정형 데이터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영업비밀로서 보호 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 금지청구권 등 ② 형사처벌(해외유출 15년/15억원, 국내유출 10년/5억원)	저작권법에 따라 편집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로서 보호 -(창작성 有) 사망 다음해부터 70년 -(창작성 無) 제작 완료/갱신한 때로부터 5년간 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 금지청구권 등 ② 형사처벌(5년/5천만원, 병과 가능)
비정형 데이터		부정경쟁방지법상 데이터의 부정취득·사용 대상으로서 보호 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 금지청구권 등 ② 기술 보호조치 무력화 행위 외에 형사처벌 미부과

자료: 특허청

현행법상 데이터 보호 체계를 살펴보면, ‘비공개된 데이터’는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영업비밀¹³⁾로서 보호받고, 공개된 데이터 중 소

10) 대법원, 2022.5.12. 선고 2021도1533

주) 크롤링: 자동화된 프로그램(크롤러)를 이용하여 웹페이지의 내용 전부 또는 특정 내용을 대량으로 가져오는 것을 말함. 통상적 웹 크롤링은 불법이 아니나, 웹 크롤링을 활용하여 타사 콘텐츠를 무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불법행위가 될 가능성이 있음.

11) 파이낸셜뉴스, “법원 ”무단 미러링 사이트는 위법, 폐쇄하라“ 첫 판결”, 2015.12.02. (<https://www.fnnews.com/news/201512011659587092>)

주) 미러링: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집적된 자료 전부를 다른 인터넷 사이트로 그대로 복사하여 가져오는 것을 말함. 데이터를 크롤러로 가져오는 것은 크롤링과 동일하나, 수집된 데이터를 추가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서비스함.

12) 다만, 해당 판례는 데이터 부정취득·사용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 과목의 부정경쟁행위(그 밖에 부정경쟁행위)가 문제가 되었던 사례임.

재가 체계적으로 배열·구성되어 있는 정형데이터는 「저작권법」에 따라¹⁴⁾ 편집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로 보호받으며, 아직 소재가 체계적으로 배열·구성되어 있지 않은 대다수의 데이터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데이터 부정취득·사용의 대상으로서 보호를 받고 있는데,

비정형·공개 데이터의 경우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하고 있을 뿐 데이터의 부정한 취득·사용 및 공개 행위에 대해서 별도로 처벌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정안은 4차산업혁명, 인공지능 등 디지털시대의 근간인 데이터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데이터에 대한 부정경쟁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민사적·행정적 제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하에 가장 강력한 제재 수단인 형사처벌을 도입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다만, 현행법이 2022년 데이터의 부정취득·사용을 부정경쟁행위의 대상으로 도입¹⁵⁾하면서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데이터

1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14) 「저작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8. “편집저작물”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19. “데이터베이스”는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15)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제2113233호)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상황에서 형사적 제재까지 도입할 경우 데이터의 활용이 과도하게 위축될 수 있음을 우려한 것이었는데 이러한 우려가 현재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2018년에 데이터에 관한 내용을 「부정경쟁방지법」에 규정한 일본의 경우에도 동일한 이유로 데이터 부정취득·사용 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그 외 데이터 부정취득·사용 행위를 처벌하는 다른 나라의 입법례는 특별히 없는 상황임.

또한, 데이터를 「부정경쟁방지법」에 포함한 2022년 이후 2024년까지 약 3년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카목이 적용된 대법원 판례가 없는 실정임.

따라서,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형벌의 보충성’의 원칙에 부합할 만큼 데이터 부정취득·사용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의 필요성이 시급하거나 불가피한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편, 형벌 규정은 문언의 해석상 이견이 생기지 않도록 명확할 필요가 있는데, “업으로서 제공된 것”, “특정인 또는 다수인에게 제공된 것”, “상당량 축적·관리될 것” 등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운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판례의 축적이나 하위 법령의 구체화 없이 형사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형벌법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해 **특허청**은 데이터와 관련한 분쟁에 대하여 형사처벌 하게 되면 데이터 거래가 과도하게 위축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참고가 될 수 있는 사례나 판례의 축적 등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법무부는 데이터를 부정 사용한 자를 형사처벌할지 여부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6)의 ‘정보통신망 침해’나 ‘비밀침해’가 개정안의 ‘데이터 부정 사용’과 구성요건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고, 법정형이 더 중한 점(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1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14.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

문 의 처
02)6788-5458